

4.2.1 교원임용규정

제정	1995. 09. 12.	전부개정	2010. 11. 12.
개정	1996. 03. 28.	개정	2012. 07. 26.
개정	1996. 06. 19.	개정	2016. 02. 18.
개정	1996. 09. 09.	개정	2018. 01. 25.
개정	1997. 09. 01.	개정	2019. 08. 29.
개정	1997. 11. 18.	개정	2019. 12. 03.
개정	1998. 02. 04.	개정	2020. 02. 05.
개정	1999. 08. 01.	개정	2020. 02. 28.
개정	2000. 04. 21.	개정	2022. 06. 23.
개정	2003. 04. 11.	개정	2023. 03. 15.
개정	2005. 02. 23.	개정	2024. 07. 23.
개정	2006. 11.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초당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 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및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8.29.〉

제2조(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08.29.〉

-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전문교수를 둘 수 있으며 비행교육원 소속교원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7.26.〉
-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임용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교원으로서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7.26., 2019.12.03.〉
- ④ 비정년트랙 전문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중 일부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 ⑤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08.29.〉

제3조(비전임교원) ①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7.26., 2019.08.29.〉

- ② 삭제 〈2019.08.29.〉
- ③ 삭제 〈2019.08.29.〉
- ④ 삭제 〈2019.08.29.〉
- ⑤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8.29.〉

제4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 1. 타 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
 - 2.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표자 또는 임직원
 - 4.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

5.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영리목적은 하지 않는 경우
7.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원의 정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 ② 정년으로 인한 퇴임의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 ③ 정년에 도달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된다.
- ④ 정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해당학과 폐과 시 정년보장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교원의 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9.08.29.>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임용과 승진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9.08.29.>

제8조(교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본 대학교 법인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부(과)의 신청으로 총장이 승인한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의 방법)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임용 및 승진절차) ① 교원의 임용 및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행한다.

- ② 교원의 임용 및 승진은 직위별로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본 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모집중지 및 폐과된 학과소속 교원은 승진을 보류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11조(신규임용) ① 신규임용되는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연봉)계약제로 임용한다.

- ② 신규임용의 최저경력년수(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는 조교수4년 이상, 부교수7년 이상, 교수10년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6.>

제12조(신규채용 방법) ①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공개채용이라 함은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특별채용이라 함은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이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특정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제19조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내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4조(지원 서류의 접수)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지원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학위 및 성적증명서
3. 경력 및 재직증명서
4.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출서류 심사방법)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1차,2차 심사) 공개강의(3차심사), 면접심사(4차심사)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자격 및 연구실적의 심사)신규임용시 연구실적물은 박사학위논문(박사학위 미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과 최근 4년이내(채용 응모서류 마감일 기준) 발표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또는 실기를 요하는 채용분야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연구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으나,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발표·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제18조(임용보류)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위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학술업적(연구 및 교육)과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술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인을 받은 자
3. 전공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 실무 경력, 독보적 기술기능을 보유한 자
4. 외국인 중 교수능력 또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자
5. 재외 한국인 학자

②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임용계약)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계약기간 : 2년(단,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특임교원의 경우 4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22.06.23.>
가. 삭제 <2012.7.26.>
나. 삭제 <2012.7.26.>
2. 급여: 상호협약에 의한 연봉계약
3. 계약조건: 책임강의학점, 소속,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4. 재임용조건 및 절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1조(퇴직교원의 신규임용)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본 대학교 교원으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퇴직 전 직급에서 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 전의 직급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제3장 재임용

제22조(재임용)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 교원을 심의하여 거쳐 총장은 재임용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사장에게 재임용 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재임용 평가 기간 중 논문연구 A 분야 평균 100점/년 이상 및 기타 연구 B 분야 평균 100점/년 이상의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6., 2023.03.15.>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관계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05.>

⑥ 교원업적평가 재임용 비율이 미달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2.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재임용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6.>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제23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자로 행한다.

제24조(재임용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재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임용기간이 경과한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반영률)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7.26. 2016.2.18.>

직급	평가기간 (제청일 이전)	영역별 최저 점수(반영률)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조교수	최근4년	50%	50%	50%
부교수	6년	50%	50%	50%

제24조의 2(재임용 제한) 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2. 성비위 또는 학생에 대한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교원품위를 훼손한 경우
 3. 연구부정(논문표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4. 과도한 수업결손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5. 음주운전, 성비위, 연구비 횡령 등 사회적 물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재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조 신설 2022.06.23.〉

제4장 승진임용

제25조(승진임용)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7조(승진임용요건)와 아래 1호를 심의케 하고, 아래 2호와 3호를 참작하여 승인한 후, 이사장에게 승진임용 제청을 한다.

1.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6.〉
 2. 학교발전에 기여
 3. 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원은 승진할 수 없으며, 휴직자는 그 기간만큼 승진소요기간을 연장시킨다. 〈개정 2012.7.26.〉

승진구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조교수 → 부교수	6년	6.5년
부교수 → 교 수	6년	6.5년

③ 승진임용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6.〉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교수 : 6년

제26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자로 행한다.〈개정 2024.07.23.〉

제27조(승진임용요건)교원의 승진임용 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및 반영률)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7.26.〉

승진직급	평가기간 (제청일 이전)	영역별 최저 점수(반영률)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부교수	4년	60%	60%	65%
교수	6년	60%	70%	75%

제28조(직급별정원) 전체 교원의 직급별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 수 : 35%
2. 부교수 이상 : 75%

제29조(동일직급의 최장근무연한) ① 교원이 동일 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근무연한은 부교수 12년, 조교수 10년에 한 한다. <개정 2012.7.26.>

② 전항에서 정한 연한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제22조제8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직급 최고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0조(교육 및 연구경력년수 계산) 연구 및 교육경력 년수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5장 연구실적 등

제31조(연구실적 심사기준)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저서 또는 번역 및 편역서(출판된 것에 한함, ISBN) <개정 2023.03.15.>
 - 나. 논문(KCI등재 후보지 이상) <개정 2023.03.15.>
 - 다. 삭제 <2023.03.15.>
3. 삭제 <2023.03.15.>
4.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박사학위 소지자 추가 학위논문) <개정 2023.03.15.>
5.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

② 논문연구 A 분야 및 기타 연구 B 분야의 연구실적 점수 산출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3.03.15.>

제32조(연구업적의 심사) 인사위원회는 임용 및 승진대상자의 연구업적을 3인 이상의 전문위원에게 위촉 심사하고, 교육업적 및 본 대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에게 위촉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03.15.>

제33조(호봉 승급) ① 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한 자로서 근무평정 및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이를 행한다.

- 기본호봉 : 1호봉 ~ 33호봉
- ② 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 ③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교원의 보수) 교원의 보수체제는 연봉제로 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봉책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01.25.>

제6장 정년보장 임용 <장 신설 2019.12.03.>

제36조(정년보장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에 따라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유고시 교무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23.>

<조 신설 2019.12.03.>

제37조(정년보장 심사대상) ①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정년보장 심의를 신청한 자로 한다.

1.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원
2.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교원 중 계약기간 내에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교수 직위로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 정년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정년보장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정년보장임용(2년 계약 후 정년보장심사) 한다.

② 정년보장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년보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교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의 경우 : 6개월
나. 감봉·견책의 경우 : 3개월

③ 정년보장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정년보장 임용을 보류한다.

1.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2. 형사범죄의 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중인 교원
3. 연구윤리 및 진실성조사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등에서 정년보장 임용 보류의 권고의견이 있는 교원
4. 모집중지(폐과대상)학과교원

<조 신설 2019.12.03.>

제38조(정년보장 심사기준) 정년보장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평정표에 평정하고 평가항목 중 A항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다만, 심사기준의 적용 시기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다. <조 신설 2019.12.03.>

제39조(정년보장 임용) 정년보장 임용대상자는 정년보장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한다. <조 신설 2019.12.03.>

제40조(정년보장 임용시기) 정년보장 임용시기는 매년 9월 1일자로 한다. <조 신설 2019.12.03.>

제41조(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교원정원의 35% 이내로 한다. <조 신설

2019.12.0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하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신규 채용교원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의 표에 대한 적용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한다.

1.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까지는 기존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의 교원 업적평가영역별 최소 소요점수 비율을 적용하고, 2006학년도 교원업적 평가부터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교원승진·재임용에 대한 영역별 최소 소요 반영률을 적용한다.
2.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최저 점수(반영률)의 계산은 (2005학년도까지 평가비율+2006학년도 부터 평가비율)/(소요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9년 11월 30일 현재 교수 직위가 아닌 교원은 2019년 12월 1일 이후 교수 승진대상이 되는 시기에 정년보장 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 정년보장전임교원 심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최근 6년이라는 승진기준 업적평가기간에는 2019년 12월 1일 이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연구실적 평가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 및 재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2023년 2월 28일 이전 임용된 교원)의 연구실적 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추후 재임용·승진임용·트랙전환임용된 경우 본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표 1〉 교원경력년수 환산율표 〈개정 2019.08.29.〉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교육 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 중앙공무원교육원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 사관학교의 교관(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 대학·전문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경력	100%
	-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강사(시간강사)의 교육경력(환산경력 5년 이내)	
	· 주당 5시간 이하	30%
	·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50%
	- 대학(전문)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50%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채용 전공분야와 일치되는 경우	50%
	- 채용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0%
	다. 대학 조교 및 체육코치 등(환산경력 2년 이내)	50%
연구 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 박사학위 취득자(환산경력 3년 이내)	100%
	- 석사학위 취득자(환산경력 2년 이내)	100%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 박사학위 수료자(환산경력 3년 이내)	70%
	- 석사학위 수료자(환산경력 2년 이내)	70%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	
-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제출자	100%	
- 기타	50%	
산업체등 경력	가.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 채용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국가기관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 채용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민간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0%
	나.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 의사로 근무한 경력	100%
	- 간호사	
	· 대학병원, 1,500 bed 이상 병원 근무경력	70%
	· 500bed ~ 1,500 bed 병원 근무경력	50%
	· 200bed ~ 500 bed 병원 근무경력	30%
- 대학병원 의무기록사	50%	
- 건축사	70%	
기타	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의무복무기간	100%
	- 직업군인	50%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정년보장전임교원 심사기준 〈신설 2019.12.03.〉

1. 각 위원별 평정 평균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교원만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로 한다.
2. 심사대상 교원은 최근 6년의 승진기준을 충족한 자로 하며 해당하는 교원업적을 평가한다.
단, 교수 직위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한다.
3. 각 항목의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정년보장전임교원 심사 배점기

평정 항목	배점	평가방식
A. 연구실적	5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소요 기준 최소점수를 충족한 경우 45점 부여 * 획득한 업적총점의 환산비율이 최소기준점수의 120% 이상 : 10점, 110% 이상~120%미만 : 6점, 101% 이상~110% 미만 : 4점을 가산한다.
B. 강의평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6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평균한다. *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4.5이상 : 5점, 4.0이상 : 4점, 3.5이상 : 3점, 3.0이상 : 2점
C. 대학발전기여도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 3>을 기준 하여 보직교수에 대한 인정점수를 대학원장 외 : 8점, 산학협력단장 외 : 4점, 학과장 : 2점, 대학평의회 위원 외 : 1점을 인정하고 최소 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최대 10점) *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제52조 특별점수(6년평균 200점 기준 최대 12점) * 학과 및 학교발전 기여 (최대 8점) : 총장 평가
D. 학생취업지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취업 지도 및 결과: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 3>의 지도학생 취업지도 점수(6년평균 35점 기준 최대 5점)
E.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한다. * 복무상황, 성실성, 책임성 등
F. 상벌 사항(가산 및 감점)	+5점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 포장 : 5점 * 대통령표창, 총장표창 : 3점 * 장관표창 : 2점 * 중징계 : -5점 * 경징계 : -2점 *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논문연구 A 분야 및 기타 연구 B 분야의 연구실적 점수 산출 기준 〈신설 2023.03.15.〉

$$\begin{aligned} \circ \text{ 논문연구 A} &= \frac{\left(\textcircled{+} \frac{\text{논문편수}}{0.35}\right) + \left(\textcircled{-} \frac{\text{SCI논문편수}}{0.05}\right)}{2} \times 100 \\ \circ \text{ 기타 연구 B} &= \frac{\left(\textcircled{+} \frac{\text{저역서수}}{0.7}\right) + \left(\textcircled{-} \frac{\text{수탁교외 연구비}}{10,000\text{천원}}\right)}{2} \times 100 \end{aligned}$$

※ 논문편 수, 저역서 수는 공동 집필의 경우 무조건 1/n 기준, (예 : 논문 3인 공저 시 0.33)

1. 실적산정 기한 내 논문연구 A 분야와 기타 연구 B 분야를 모두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기타 연구 B 분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논문연구 A 분야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정년보장임용 심사 평정표

심사 대상자	소속		임용 사항	
	직위		신규임용일	
	성명		현 임용기간	

평정 항목	배점	평정점수	실 적 내 용					
A. 연구실적	55점		기준점수		환산점수			
B. 강의평가	5점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C. 대학발전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점수(보직) : 최대 10점 ■ 특별점수 : 최대 12점 ■ 학과 및 학교발전기여 : 최대 8점 	30점		인정점수(보직교수)			점수		
			특별 점수			점수		
			학과 및 학교발전 기여			점수		
D. 학생취업지도	5점		학생취업			점수		
E.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5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5점	4점	3점	2점	
F. 상벌 사항(가산 및 감점)	+5점 ~ -5점		상벌 내역				점수	
평점 총계(A+B+C+D+E+F)		점						
정년보장 기준 충족 여부		평정 기준일 20 . . .						
충족 ()		정년보장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 _____(서명)						
미충족 ()								